

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

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

동의년월일 : 92년 6월 15일

(제79회임시회 제1차산업위원회)

수정동의자 : 우 범 성 위원

찬 성 자 : 정 진 철 위원

류 명 희 위원

안 재 원 위원

김 인 식 위원

유 영 훈 위원

1. 수정이유

- 은영기금 사용에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수증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 확충 및 운영등에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현 실정
으로 보아 교육시설의 설치 확충은 더이상 필요치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은수증사자
의 교육운영등에 사용특례 합이 타당할것으로 판단.

2. 수정주요내용

- 은수증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·확충 및 운영 → 은수증사자의 교육운영

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수 정 안 |
|---|---|--|
| <p><u>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</u> <u>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</u> <u>징수조례</u></p> 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징수하는 과징금의 부과,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(신 설)</p> <p>(신 설)</p> | <p><u>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</u> <u>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</u> <u>징수및운영조례</u></p> <p>제1조 (목적) ----- ----- ----- 과징금의 부과, 징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8조 (운영기금구성) 도지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(이하 "과징금"이라 한다)의 일부를 자동차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운영기금 (이하 "운영기금"이라 한다)으로 적립한다</p> <p>제9조 (운영기금적립 및 관리) ①도지사는 과징금 징수액중 당해연도 과징금은동계회에 계상된 소요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한다.</p> | 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조 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8조 (운영기금구성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9조 (운영기금 적립 및 관리) (개정안과 같음)</p> |

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
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 제3호중 " 교육시설의 설치·확충및 운영 " 을 " 교육운영 "으로 한다.

| 현행 | 개정안 | 수정안 |
|---|--|---|
| <p>(신 설)</p> <p>제11조 (시행규칙) (생 략)</p> | <p>② <u>운영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정하여 적립한다.</u></p> <p>③ <u>운영기금관리로 생기는 과실은 기금에 편입한다</u></p> <p>제10조 (운영기금의 사용) 운영기금은 <u>지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4항에 규정한다</u> <u>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 (보조 또는 용자를 포함한다) 한다.</u></p> <p>1. <u>벽지노선운행에 따른 결손의 보전</u></p> <p>2. <u>교통안전시설의 확충</u></p> <p>3. <u>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·확충 및 운영</u></p> <p>4. <u>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u></p> <p>제11조 (시행규칙) (현행과 같음)</p> | <p>제10조 (운영기금의 사용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<u>운수종사자의 교육 운영</u></p> <p>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1조 (시행규칙) (개정안과 같음)</p> |